

FTA BRIEF

Vol. 06
August 2024

EU 공급망실사지침 발효,
한-EU FTA 수출기업도 대응 전략 수립 필요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 사진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 체코와 TIFP 공식 서명 예정

- ☑ 2024년 9월, 한국과 체코는 다양한 형태로 경제를 넓히기 위해 무역·투자·공급망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담고 있는 TIFP를 체결할 전망에 있다.
- ☑ 양국의 교역은 1990년 수교 이후 8배 이상 늘었으며, 신규 원전 수주를 넘어, 첨단·이차전지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 협력 강화 및 교역 규모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신규 통상 협정 함께 알아보기

01 → 우리나라 통상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 ☑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안보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장 개방'을 핵심으로 두는 FTA에서 '경제 협력'을 방점을 두는 신규 통상 협정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 ☑ 자국 우선주의 확장과 공급망 재편 등 급속한 통상질서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새로운 통상 협력 체계로 떠오른 (1) EPA (2) TIFP (3) IPEF의 특징을 FTA와 비교하여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02 → 통상 협력체계 내용과 체결 현황

- ☑ 앞서 소개한 4개의 경제 협정 및 프레임워크는 각기 다른 목적과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협력체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
 2)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경제동반자협정
 3) TIFP(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4)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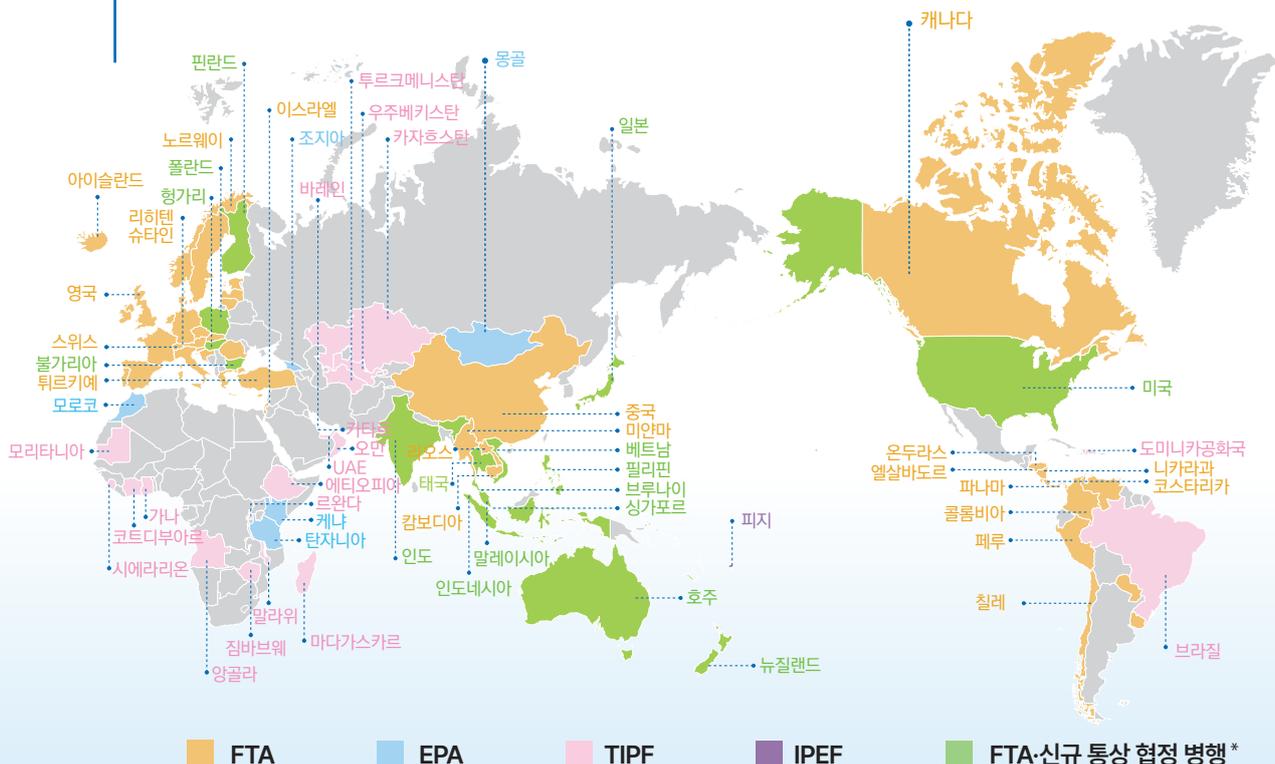


통상 협정 비교

구분	FTA	EPA	TIPF	IPEF
목적	관세(양허)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낮춰 회원국 간의 무역 촉진을 위함	FTA의 범위보다 확장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목표로 함	대만 정부가 제안한 경제 프레임워크, FTA 체결 및 개별 분야 협력을 필요로 하는 특정 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 협력 촉진하기 위함	중국의 경제 영향력을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로 추진된 경제통상협력체로 인도-태평양 내 경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범위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외 투자, 지적 재산권, 노동, 환경, 규제 협력 등 폭넓은 경제 활동을 포함	구체적인 관세 철폐보다는 무역과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 강화 및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 경제, 공정경제 4개 분야 중심으로 다룸
특징	시장개방효과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체결	시장개방수준은 FTA에 비해 낮으나 공급망 등 양국간 산업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장개방에 거부감 높은 신흥국 중심으로 체결	협상이 장기간 소요되는 FTA와는 달리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며, 다양한 통상 이슈를 즉각 대응하고 법적 구속력 없음	협력 분야별 일괄 타결 가입이 아닌 4개 분야의 선택적 가입 방식으로 가입이 용이함
국가 수	21건 59개국	총6개국과의 협상 · 여건 조성 중	23개국	14개국

* 2024년 8월 기준

체결현황



* 주 : 우리나라 FTA 체결국 기준, 신규 통상 협정을 병행하고 있는 국가

EU 공급망실사지침 발효, 한-EU FTA 수출기업도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전 세계적으로 환경·인권 관련 의무 부과 제도가 강화
- 최근 발효된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은 EU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 기업에도 공급망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여
- 따라서 對EU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은 공급망 실사 대응 부담이 가중될 전망
- 우리 기업이 해당 지침 대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과 대응 방향을 검토
-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환경·인권 관련 관리 사례를 통해 우리기업의 공급망 관리 인식제고와 대응 전략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함

[글_이범수 한국원산지정보원 정보분석팀 전문연구원]



1. 배경



유럽(EU)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10.8%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시장이다.

최근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¹⁾」, 「배터리규제(EUBR²⁾」, 「산림전용방지규정(EUDR³⁾」 등 ESG⁴⁾ 관련 규제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발효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이하 'EU 공급망실사지침」)이 2026년까지 EU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면 우리나라 對EU 수출 기업에게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EU와 FTA를 체결하여 일본, 중국, 대만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했던 경험이 있다. 이에 금번 「EU 공급망실사지침」 실시 역시 관련 규정의 이해 및 선제적인 대응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다시 한번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판단된다.

본 기고는 「EU 공급망실사지침」과 관련하여 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과 EU 기업의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 기업이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EU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
- 2) 유럽연합 배터리규제(EU Battery Regulation, EUBR) : EU 내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상품 배터리에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
- 3)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규정(EU Deforestation-free Regulation, EUDR) : 산림전용 위험이 높은 7대 품목(소, 코코아, 커피, 야자유, 고무, 콩, 목재) 및 파생 제품에 대해 산림 파괴·황폐화에 영향이 없었음을 공급망 관리를 통해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
- 4)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단어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해 평가하는 방식

2. EU 공급망 실사지침 추진 현황

2022년 2월에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던 「EU 공급망실사지침」 법안이 최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어 금년 7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EU 공급망실사지침」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기업이 공급망 및 사업장 운영 등 활동에서 인권·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2026년까지 EU 회원국별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EU 역내 기업뿐만 아니라 역외 기업도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EU의 지속가능한 ESG 경영에 대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EU 공급망 실사지침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EU 역내 외 기업 모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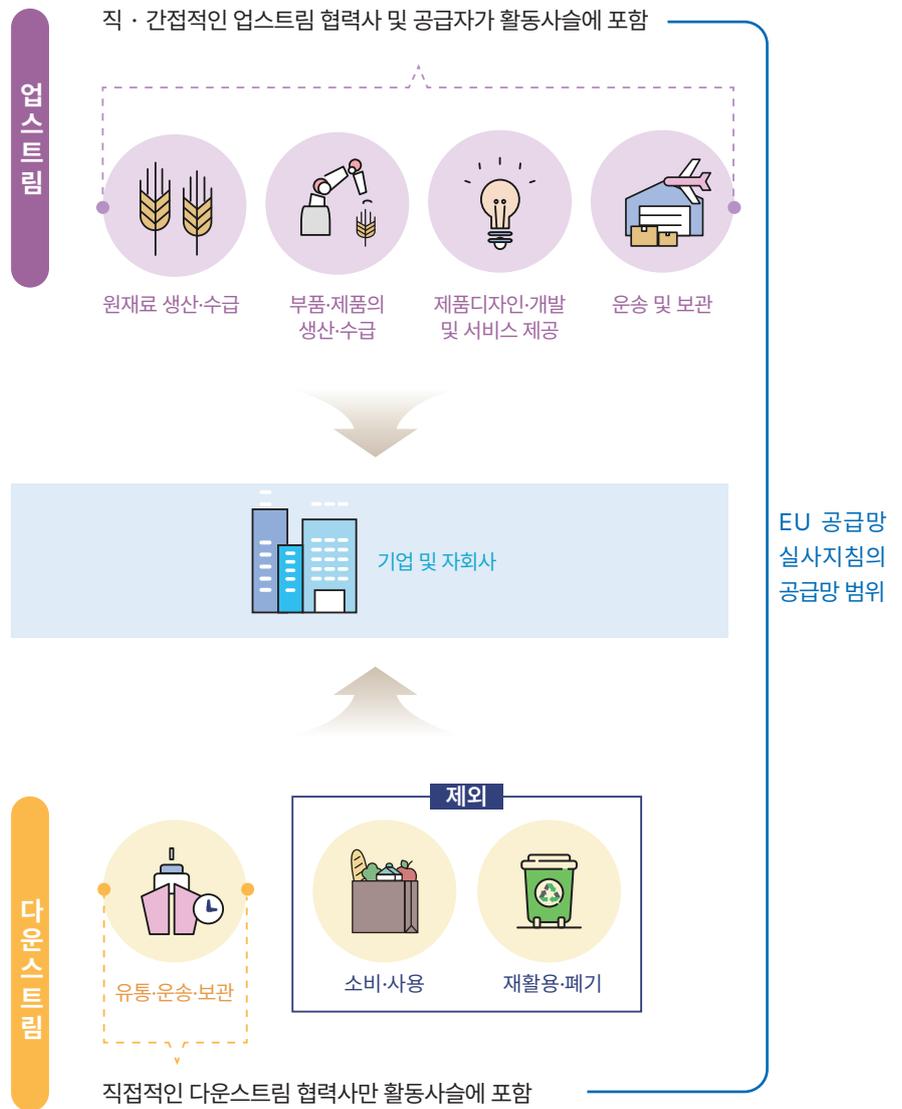
「EU 공급망실사지침」은 다음과 같이 법안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에 적용되며 그 기준은 일반 기업과 로열티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구분된다.



* 주 : 기업이 상기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의 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상 적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종 모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공급망의 범위 : 원재료 생산·수급 단계부터 포함

「EU 공급망실사지침」에서 공급망의 범위는 “활동사슬(Chain of Activity)”의 정의를 통해 “업스트림(Upstream)”과 “다운스트림(Downstream)”을 규정하고 있다.



© 자료 출처 : focusright(www.focusright.ch) 기사 번역

해당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망 범위는 업스트림의 경우 원재료·부품·제품의 생산·수급과 디자인·개발·운송 등 모든 단계를 포함한다.

다운스트림은 소비자의 사용·폐기 단계를 제외한 제품의 유통·운송·보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수출통제 상품(규정(EU)2021/821) 및 무기, 군수물자, 군수용품은 제외되었다.

❖ **실사의무 세부내용 : 인권·환경 부정영향 식별 및 관리체계 구축**

적용대상기업은 기업 자체 활동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위치한 자회사 및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 환경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평가 후 예방·완화·제거 등 피해 구제절차 마련 및 이행 모니터링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① 기업정책에 공급망 실사 의무 반영
- ②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파악·평가
- ③ 실재적·잠재적 영향의 예방·제거·최소화
- ④ 피해 구제절차 마련 및 이의제기 체계 관리
- ⑤ 실사 정책 및 조치 효과 모니터링
- ⑥ 실사 의무 이행 내용 공개 등

❖ **적용 시점 : 2년 내 국내법 마련 필요**

EU 회원국은 'EU 공급망실사지침' 발효일로부터 2년 내에 관련 국내법을 마련해야 하며, 지침 발효일 기준 3~5년 후부터는 대상 기업의 적용 기준(직원수 및 매출규모 등)을 순차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구분		3년 후(2027년)	4년 후(2028년)	5년 후(2029년)
EU 역내	직원수	5,000명 초과	3,000명 초과	1,000명 초과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5억 유로 초과
역외	EU 역내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9억 유로 초과	4.5억 유로 초과

* 주 : 로열티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적용시점은 발효일 기준 5년 후 일괄적으로 적용할 예정



4. EU 국가별 관련 법 도입 현황 및 대응 사례



EU 회원국 중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한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환경·인권 및 공급망 실사에 관련한 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가	도입년도	법안	주요 내용
 영국	2015년	현대 노예제 방지법 (Modern Slavery Act-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예제,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대상기업은 '노예와 인신매매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야 하며, 발생 유무와 관련 조치를 기술해야 함 - 총 매출액이 3,6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제조 및 서비스 기업에게 부과됨
 프랑스	2017년	기업감시의무법 (Loi de Vigilance, French Duty of Vigilance La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내 5,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거나 세계적으로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프랑스 대기업에 대해 자사 및 직·간접 공급망 업체 실사 의무 부과 - 사업 활동 관련 기본권, 건강, 개인의 안전 및 환경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
 독일	2023년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Supply Chain Due Diligence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내에서의 고용 인원이 3,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자체 사업 영역, 직·간접 공급망을 모두 포괄한 전체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 보고서 작성 및 대외 공시 의무 부과

◎ 자료 출처 : 한국NCP 주관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 합동 세미나(2024.07.08.)" 발제

영국은 2015년에 선도적으로 인권 중심의 법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프랑스는 인권 및 환경 분야로 의무를 확대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발효된 독일은 기업 실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을 최초로 포함하는 등 대상 및 분야를 점차 확대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법안 이행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EU 공급망실사지침」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고 다른 국가의 법안보다 구체화된 독일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LkSG)」과 독일 기업의 대응 사례 등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 독일「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하 '공급망 실사법)」 개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2023.01.01. 발효)」은 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환경·인권 관련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적용 기준, 위반 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최초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 (2023년) 독일 내 고용인 수가 3,000명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 - (2024년) 독일 내 고용인 수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확대 적용
실사 대상	- 인권 관련 아동노동, 강제노동, 노예제, 작업장 안전, 건강미유지노동, 저임금노동 및 인종·사회적 지위·성별 등에 대한 차별 등(ILO협약 채택 조항) - 환경 관련 수은 관련(미나미타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련(스톡홀름협약), 유해 폐기물의 수출입(바젤협약) 등
실사 의무	- 법령에 따라 적용 대상기업은 자체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공급망(공급업체 및 협력사 등)에 대한 공급망 위험을 진단하고 평가하며 이에 대한 실사 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관리감독기관	- 독일 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관리·감독
위반 시 제재	- 위반 기업은 최장 3년간 공공조달 계약 대상에서 제외 - 위반 시 벌금은 최대 80만 유로로 책정(단, 연 매출 4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매출의 2%까지 부과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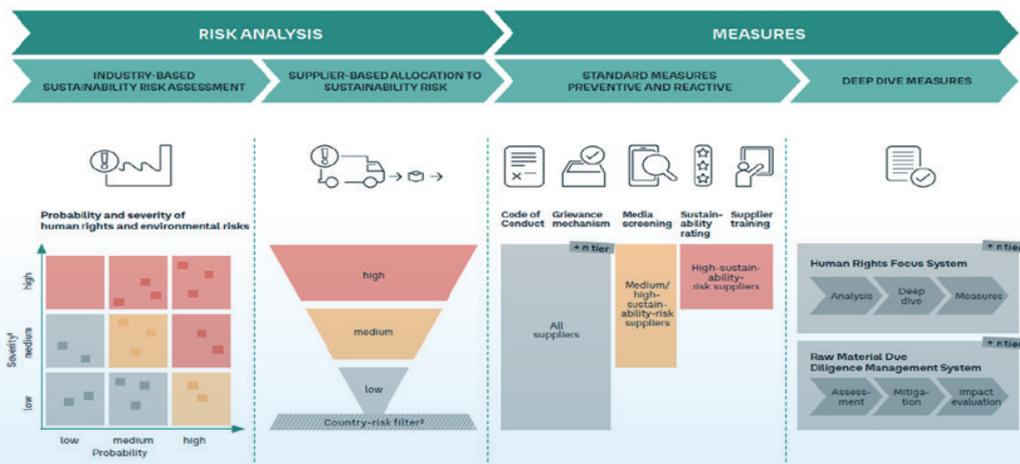
❖ 독일 폭스바겐 그룹의 인권·환경 관련 실사 대응 사례

2023년 발효된 「공급망 실사법」에 따른 현지 기업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Volkswagen Group)은 (승용)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및 (상용)만·스카니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로 자국의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하여 최종 모기업인 폭스바겐 그룹이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 책임감 있는 공급망 시스템(ReSC) 도입

폭스바겐 그룹은 환경·인권·지배구조 분야에 대한 산업별·국가별로 위험 수준을 체계화하여 분석한 후, 위험평가 대응책을 표준대책과 심화대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공급망 시스템(ReSC)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자료 출처 : Volkswagen Group “ESG Conference(2024.04.09.)”

위험분석

우선 폭스바겐 그룹은 (환경)환경·생물다양성, (인권)노동·보건안전·사회적 권리·노예제도·정신건강, (지배구조)부패방지·공적업무수행 등 ESG 각 요소별로 세분화하여 개별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중 ①산업별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가능성’과 ‘심각성’으로 구분하여 식별·평가하고 ②지역·국가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은 ‘상·중·하’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대책마련

특히, 이렇게 식별된 위험에 대한 예방·제거를 위해 표준대책과 심화대책로 관리 수준을 구분하여 조치하고 있다.

✓ **표준대책**

전 세계 96개국 63,000개 이상의 폭스바겐 그룹 협력사를 대상으로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공급망 이의제기 체계 구축, 미디어스크리닝, 지속가능성평가 및 공급업체 교육을 통해 식별된 위험을 예방·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구분	주요 내용
공급망 이의제기체계	공급망의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를 위해 이의제기체계(Supply Chain Grievance Mechanism, SCGM) 구축 - (1단계) 실제 비즈니스 관계 여부 및 불만·이의제기의 타당성 검토 - (2단계) 공급망과 의사소통 및 대응방향에 대한 평가 - (3단계) 조치 완료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미디어스크리닝	별도 AI 위험감지 시스템(Prewave)을 활용하여 150개국에 위치한 공급망에 대한 위험 감지 실시 - 전 세계 관련 기사 및 소셜 미디어 분석 - 환경, 정부정책, 건강 및 안전, 인권·노동권 등에 대한 정보 수집 - 지속적인 공급망 추가를 통해 위험 감지 확대
지속가능성평가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설문조사(SAQ)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직원 수 10명 이상인 공급망·협력사를 대상으로 “S-Rating”이라는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 - [환경] ISO 14001 또는 EMAS 등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직원수 100명 이상 협력사 대상) - [인권] ISO 45001 또는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직원수 1,000명 이상 협력사 대상)
공급망 교육	지속적인 공급망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 - 인권 실사에 대한 워크숍 개최 - 협력사의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실시 - S-Rating 관련 요구사항 안내를 위한 세미나 실시

✓ **심화대책**

폭스바겐 그룹은 수많은 자동차 부품 중 환경 및 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요소가 높은 주요 18개의 원자재를 선별하여 표준대책보다 높은 수준의 심화대책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고 예방·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자료 출처 : Volkswagen Group "Responsible Raw Materials Report 2023"

앞서 식별·평가된 산업별·지역별·국가별 부정적 영향을 기준으로

① 해당 원자재 공급망 현황, ② 위험 평가, ③ 위험 완화 조치 및 ④ 향후 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결과를 연도별 “책임있는 원자재 보고서 (Responsible Raw Materials Report)”로 발간하고 있다.

● 책임있는 원자재 보고서 내용 예시(일부)

구분	공급국가	위험식별			평가·조치·계획	
		환경	인권	의사소통		
배터리	리튬	중국·호주 등 4개국	물부족·산림파괴	강제노동	원주민 권리	신규 리튬 생산 국가에 대한 관리
	코발트	중국·콩고 등 6개국	대기오염·폐기물·산림파괴	아동노동·차별·적정임금	원주민 권리	EUBR 규정 관련 도구 개발
	니켈	인도네시아 등 6개국	대기오염·폐기물·산림파괴	강제노동·아동노동·차별·임금	퇴거·도용·원주민 권리	채굴 및 정제에 대한 지속가능성 관리
	천연 흑연	중국·모잠비크 등 3개국	대기오염·폐기물·산림파괴	강제노동·아동노동·차별·임금	퇴거·도용·원주민 권리	EUBR 규정 관련 도구 개발

– 공시 의무 이행

폭스바겐 그룹은 「공급망 실사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룹의 공급망 실사 조치에 대한 행동강령 및 원자재 관련 보고서 등 이행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Reports & presentations

 <p>Code of Conduct for Business Partner 07/28/2023 · Publication · English and Spanish version · The Code of Conduct for Business...</p> <p style="text-align: right;">↓ 🛒 ↗</p>	 <p>Supply Chain and Human Rights 2023 03/13/2024 · Publication</p> <p style="text-align: right;">↓ 🛒 ↗</p>
 <p>Responsible Raw Materials Report 2023 06/27/2024 · Publication</p> <p style="text-align: right;">↓ 🛒 ↗</p>	 <p>Association Climate Review 2023 05/02/2023 · Company Report</p> <p style="text-align: right;">↓ 🛒 ↗</p>

© 자료 출처 : Volkswagen Group 홈페이지

❖ 우리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 : 회원국 국내 공급망 실사법 점차 강화될 전망

현재 발효된 「EU 공급망실사지침」은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에 비해 적용 대상기업의 범위가 넓고 공급망의 개념 또한 활동사슬까지 포함하고 있어 업스트림·다운스트림 모두 관리해야 하므로 현재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향후 「EU 공급망실사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독일 「공급망 실사법」 사례와 같이 EU 회원국의 국내법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폭넓게 보면 앞으로 對EU 수출과 관련된 모든 기업은 공급망 실사 대응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임이 분명하다.

국내 대·중견기업과 같이 「EU 공급망실사지침」 적용대상기업은 물론 해당 공급망 내 중소기업 등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에 속하는 모든 우리 기업은 지속가능한 ESG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EU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 요소

구분	대상기업(대·중견기업)	공급망내 협력사(중소·영세기업)
실사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사의무 관련 정책·시스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24개월) 검토 및 현행화 부정적 영향 식별·평가·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 수립(필요시) 지속 관찰 및 공시 부담(1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관련 도입 부담 실사의무 준수 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별 정책 등에 따라 기준이 일부 상이할 가능성 존재
이행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 지원·관리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제기 체계 마련 및 협력사 대상 지속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사 대응 비용·인력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사 대응에 따른 업무 증가 부담
제재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망 배제 위험 노출

◎ 자료 출처 : EU 공급망 실사지침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산은조사월보 제822호) 기준 연구자 각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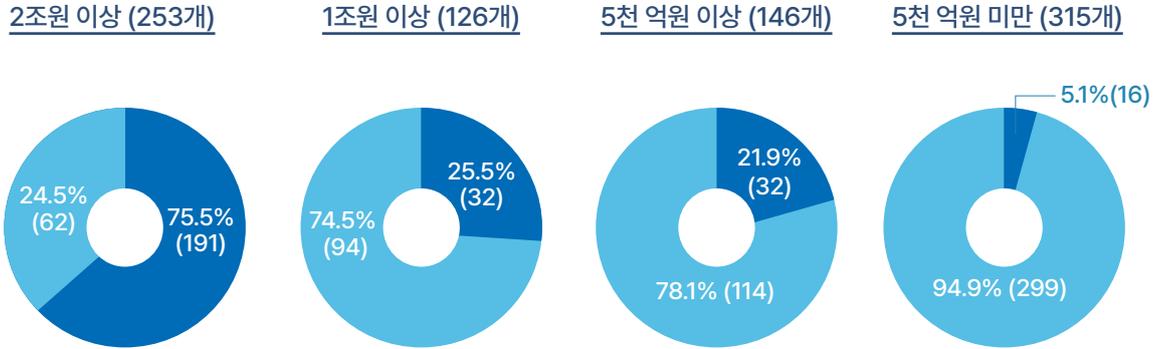
또한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EU 공급망실사지침」 위반을 관할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 우리 기업의 대응 준비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자산 규모별 ESG 경영 공시 현황은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주요한 참고 자료이다.

● 국내 기업 자산 규모별 ESG 경영 공시 현황

* 보고서 발간 현황: ■ 발간 ■ 미발간 | 비율(기업수)



* 주: 2023년 기준 유가증권 상장 총 840개 기업 대상

© 자료 출처: 한국NCP 주관 “2024 기업책임경영(RBC) 민관 합동 세미나(2024.07.08.)” 발췌

위 그림과 같이 23년 기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의 75.5%가 ESG 경영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기반으로 「EU 공급망실사지침」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하고 협력사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이행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산 규모 2조원 미만의 기업의 상당 수(86.4%, 587개 기업 중 507개 기업)는 현재 ESG 경영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지 않다.

ESG 미공시 기업은 「EU 공급망실사지침」을 대응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자사의 기본 정책 수립부터 부정적 영향 식별·평가 및 협력사에 대한 공급망 실사 이행 지원·협력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때 최종 모기업이 동반 성장의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과 행동강령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자회사 및 공급망 내 협력사에게 안내하고, 적용대상기업과 협력사 간 책임이 적절히 분담될 수 있도록 마련한다면 협력사들도 보다 일관적인 방향으로 대응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급망에 포함되는 중소·영세기업은 공급망 실사에 대한 협력이 미온적이거나 향후 실사 이행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공급망 배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자사의 대응수준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사나 정부의 지원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우리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ESG 관련 정부 지원 제도

정책과제	부처	일정
1. 진단·컨설팅 강화		
① 컨설팅 제공		
- 업종별 컨설팅, 실사대응 컨설팅	산업부	`23년~
- 분야별 컨설팅	환경부·고용부	`23년~
② 수준진단 고도화	중기부	`23.下
③ ESG 인식 확산	중기부·환경부	`23년~
2. 정보기반 마련		
① 실사대응 플랫폼 구축	산업부	`24년~
② 정보 활용성 제고		
- 기존정보 정비, 추가 정보제공	산업부	`24년~
-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환경부	`24년~
③ 맞춤형 가이드언스 제공		
- K-ESG 가이드라인, 대응 가이드북	산업부·환경부	`23년~
3. 인력·자금여건 개선		
① 종합지원단 운영	중기부	`24년~
② 대응인력 양성	산업부·중기부·환경부	`23.下
③ 금융지원	중기부·환경부	`23년~
4. 원청·협력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① 협업기반 조성		
- 공동대응 프로세스 구축	중기부	`23년~
② 네트워크 운영	산업부·중기부·환경부	`23.下

◎ 자료 출처 :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2023.05.24.,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6. 맺음말



「EU 공급망실사지침」의 발효로 인해 그동안 전 세계 국가별로 상이했던 ESG 관련 공급망 실사 제도가 EU의 주도로 표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향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ESG 관련 공급망 실사 제도에 우리 기업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지침은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높아지는 무역장벽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EU 공급망실사지침」의 시행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일반화된다면 오히려 공급망의 투명성이 확보됨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강화, 원산지 세탁의 위험 감소 등으로 연계되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대기업을 제외한 우리 기업의 상당 수가 ESG 공시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본 기고에서는 「EU 공급망실사지침」이 상당 부분 반영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주요 내용과 폭스바겐의 대응 사례를 검토하여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폭스바겐 그룹이 마련한 공급망 시스템의 ESG 각 분야별 위험분석과 대응조치 체계 등을 참고하여 아직 「EU 공급망실사지침」의 이해와 대응 준비가 부족한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ESG 대응 여력이 부족한 우리 중소·영세기업들을 위해 주요 부처에서 자사 현황 진단, 맞춤형 가이드라인 제공, 인력·자금 지원, 공동 대응 프로세스 구축 등과 같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한다면 ESG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FTA BRIEF

Vol. 06 | August 2024



한국원산지정보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